■ 소득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103호서식] <개정 2024. 12. 31.>

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세액공제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
1. 국외전출자(신청인) 기본사항

①성명	②주민등록번호	③국외전출 당시 국내 주소(한글)

④거주지국	코드	⑤거주지국의 상세 주소(영문)

⑥국외전출 후 전화번호(국가번호 포함)	⑦ 전자우편 주소	⑧국외전출일	⑨ 양도세 신고일

2. 세액공제 기 공제분 누계액

⑩ 신고 납부세액	⑪ 조정세액공제 누계액	⑫ 외국납부세액 누계액	⑬ 원천납부세액 누계액	⑭ 공제 후 잔액 (⑩-⑪-⑫-⑬)

3. 해당 주식 양도내역

출국시 신고내용			실제 양도내용				
⑮ 양도가액	⑯ 필요경비	⑰ 양도소득 금액(⑮-⑯)	⑱ 양도가액	⑲ 필요경비	⑳ 양도소득 금액(⑱-⑲)	㉑ 외국 납부세액	㉒ 원천 납부세액

4. 조정공제액 계산(실제 양도가액이 출국일 당시의 양도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 작성)

㉓ 양도가액 감소분 (⑮-⑱)	세율	㉔ 조정공제 대상액 (㉓×세율)	㉕ 조정공제 가능액 (Min(⑭,㉔))	㉖ 조정공제액

5.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계산

(외국정부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거나, 취득가액을 출국일 당시의 양도가액으로 조정하지 않는 경우에 작성)

㉗ 조정공제 후 납부세액 (⑭-㉖ >= 0)	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액 (㉑×⑰/⑳)	㉙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(Min(㉗,㉘))

6.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(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 작성)

㉚ 조정공제 후 납부세액 (⑭-㉖ >= 0)	㉛ 원천납부세액공제 대상액 (㉒×⑰/⑳)	㉜ 원천납부세액 공제액 (Min(㉚,㉛))

7. 당해 양도분 세액공제액 합계

㉝ 조정공제액(=㉖)	㉞ 외국납부세액 공제액(=㉙)	㉟ 원천납부세액 공제액(=㉜)	㊱ 세액공제 합계 (㉝+㉞또는㉝+㉟)

「소득세법」 제118조의12부터 제118조의15까지 및 시행령 제178조의10·제178조의11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첨부서류	1. 국외전출 당시 제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2. 주식 매매계약서 등 주식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 - 외국납부세액의 증빙서류,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, 기 제출한 세액공제 신청서 등

■ 소득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103호서식 부표] <신설 2017. 3. 10.>

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양도내역서

연번	양도주식 기본사항			출국시 신고내용		실제 양도내용			
	양도일	사업자번호	법인명	양도가액	필요경비	양도가액	필요경비	외국납부 세액	원천납부 세액
합계									
1									
2									
3									
4									
5									
6									
7									
8									
9									
10									
11									
12									
13									
14									
15									
16									
17									
18									
19									
20									